



디지털도서관 구현을 위한 의학분야 저작물 현황분석: H대 의학학술정보관을 중심으로

홍용표 · 송정연 · 장예진

한양대학교 의학학술정보관

Analysis of the Medical Books for Building Digital Libraries: Based on the Medical Library of Hanyang Univ.

Yongpyo Hong, Jeongyeon Song, Yejin Jang

Medical Library of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We analyzed the explore a tool to facilitate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allows streamlining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of authors, publishers and other rights holders of a work for building digital library, including whether it is orphan, in or out of copyright or if it is still commercially available.

Methods: Therefore the articl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academic medical books based on the medical library of Hanyang University.

Results: By the overview of its findings, built an rights information database so that can be used to collect and utilize the data for the potential users of works that check the copyright holder.

Conclusion: 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ork is expected to be further research is in progress by the supplementary study with collaborative library and institutions, rights information database flourishing, and the library digitization will have a future. [J Korean Med Libr Assoc 2014;41(1):33-51]

Keywords: Digital Library, Orphan Works, Copyright, Rights Information, Medical Books

서 론

디지털도서관 구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최근 구글이 미국 작가조합과의 소송에서 승리함[1]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2004년 구글은 전세계의 모든 책을 스캔, 전자문서화해 온라인상에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구글북스(Google Books)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2]. 그러나 미국출판사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와 작가조합(Authors Guild)이 각각 2005년 구글북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었다. 지난 해 11월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구글

Received October 15, 2014, Revised November 20, 2014, Accepted December 16, 2014

Corresponding author: Yongpyo Hong

Medical Library of Hanyang University,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133-791, Korea

Tel: 82-2-2220-1376, Fax: 82-2-2220-2470, E-mail: hopyo@hanyang.ac.kr

본 논문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실시한 ‘2014년 연구 프로젝트 공모’수상작으로 최종 보고서를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 논문으로 제출함.

Copyright © 2014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이 수백만권의 도서를 스캔해 공개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며,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3]고 판시하면서 8년간의 지루한 법정다툼은 1라운드를 마치게 되었다. 이로써 구글의 디지털 사업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글이 제공하는 디지털복사본을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향후 도서관의 디지털화와 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은 전통적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4]. 그러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상에서는 모든 도서를 디지털화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고아저작물 때문이다. 고아저작물은 이용허락을 얻고자 하여도 이용허락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로 창작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법적,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5]. 도서관에서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하거나 공중에게 이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의 소유자를 찾지 못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잠재적인 이용자는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규모로 진행하는 디지털사업에서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처리 자체가 성가시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디지털구축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아저작물의 공적 접근과 이용을 위해 고아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고아저작물의 잠재적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쉽게 저작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EU는 저작물의 권리, 권리자 그리고 고아저작물 혹은 절판저작물 여부를 포함한 권리상태의 확인을 위해 저작물 권리정보 DB인 ARROW (Accessible Registries of Rights Information and Orphan Works toward Europeana)를 2007년 설계하고 현재 구축중에 있다[6].

우리나라는 고아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

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제¹⁾를 두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역할을 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허락은 고아저작물을 확인하는데, 이용자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대량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많이 걸려서 법정허락 절차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7]. 게다가 고아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나 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존재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생몰년이나 소재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적 이용자는 권리처리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여 실제 이용까지는 멀게 느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아저작물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정확한 통계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아저작물의 정확한 수치나 현황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저작물중에서는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서 저작권이 소멸된 만료저작물을 포함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자가 국가에 그 권리를 기증한 기증저작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작성했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하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²⁾ 등 저작권 권리관계가 없는 공유저작물 등이 다수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은 자유롭게 디지털복제를 하여도 무방한 저작물이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이 디지털복제가 가능한 공유저작물인지, 법정허락을 받아야 하는 고아저작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률적 제약 때문에 디지털도서관 구현을 하기는 쉽지 않다.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저작자의 신원이나 소재가 불명확한 고아저작물인지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고아저작물일 경우 저작자의 존재나 신원을 확인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원이나 권리정보를 알 수 있다면 저작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비용

1)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2) CCL(Creative Commons License)로, 저작자 중에서 공중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특정한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이용시키기를 원할 경우, 라이센스를 적용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저작자가 적용한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게 한 저작물(시사상식사전. 서울:박문각; 2013)

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아저작물이 저작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디지털도서관 구축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지만 고아저작물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나 현황이 알려진 바는 없어서, 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하는 자료의 실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고아저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나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국내외 저작자 생몰지도 등의 저작자 권리정보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직 도서관에서 잘 알고 있지 못한 고아저작물에 대하여 개념과 실체를 알아보고 디지털도서관 구축의 장애물인 고아저작물 문제를 도서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최초로 의학분야 저작물의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저작물의 서지정보와 참고정보원을 통해서 저작자의 존재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원을 추출하였고셋째, 추출 정보를 이용하여 저작권 권리관리정보의 기본 데이터를 만들고 넷째, 기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집적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이 연구가 모든 주제분야로 확대되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저작물 권리관리정보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간의 집적과 공유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을 위한 과제로 남겨 놓았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고아저작물에 대한 개념과 구글 북스의 배경과 문제점 등에 관해 간략히 선행연구와 이론적인 측면을 고찰하고, H대학 의학학술정보관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의학분야 저작물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해 여러 대학이나 더 많은 장서를 확보하여 표본을 선정하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된 바가 없고 저작물의 특성상 저작자의 생몰관계를 유료 인물데이터베이스나 참고서지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특정 대학의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의학분야 저작물은 각 도서관들의 장서구성이나 특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사료되어, 특정대학의 조사결과가 다른 도서관의 사례나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정확한 현황분석을 위해서 특정기간 이전의 소

장자료 전체 리스트를 전산실을 통해 입수하였고, 기본적인 서지사항을 분석해서 권리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와 유형, 범위 등을 확정하였다. 저작물의 특성상 복본자료들과 개인 연구논문인 학위논문과 개별 학회나 업체가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저널들은 제외하였으며, 국제조약 위반의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저작물도 제외하였다.

확정된 리스트를 바탕으로 저작물의 현물을 직접 확인하여 저작자의 생몰년과 필요한 서지사항을 DB데이터와 대조하고, 서지사항이 정확하다고 확정된 자료는 저작자의 존재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거나 유추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원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했다. 데이터베이스는 저작자정보(저술의 형식과 역할, 저작자의 출신학교와 이수전공, 저작자의 직업과 소속기관, 현재전공분야, 생몰년), 저작물정보(서명, 번역서자여부), 출판정보(출판사, 출판년도) 등의 기초 데이터를 기록하여 디지털 복제를 위한 권리관계 파악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생몰년이 없는 자료는 언론기관 인물DB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인명록 DVD [8], 전기레코드, 참고서지(한국대학연감[9],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명부[10], 보건인명록[11], 보건연감[12]),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서 확인하여 추가하였고 그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DB 검색을 통해서 의학분야 공유저작물의 관련성도 확인하였다. 기존 DB 검색이외에 전화문의 등의 오프라인방식도 동원해서 저작자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확인하였으며, 의학분야 저작물의 저작자가 대부분 의료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기관을 통해 해당 저작물 저작자의 존재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확인할 수 있는 경로나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확인된 정보는 저작물의 분포나 관계, 시대별, 지역별, 기관별로 필요한 결과물로 분석되었고, 최종 확인된 정보는 전체 저작물, 생몰년이 확인된 저작물, 작고한 분의 저작물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지정보에서 추출한 정보와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리하여 이를 DB화하여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표 1. 분석대상 저작물 현황

| 대상 | 내용 | 누적권수 |
|-----------------|-----------------------------------|--------|
| 전체저작물 | | 94,077 |
| 복본제외저작물 | c.2부터 제외 | 87,442 |
| 단행본저작물 | MEM이외 제외(MWM, MES, MWS, MDM, MAV) | 8,036 |
| 국내저작물 | 발행지ulki외 제외 | 7,636 |
| 순수의학저작물 | DDC분류번호610만(비의학 제외) | 7,172 |
| | 연보, 연감 제외 | 5,741 |
| | 문제지 제외 | 4,888 |
| | 에러데이터 삭제 | 4,376 |
| | 복본추가 삭제 | 4,077 |
| 순수의학저작물(분석저작물) | 미소장 자료 제외 | 3,875 |
| | 구리자료실 소장자료 제외 | 3,784 |
| 생몰년 확인 저작물 | | 973 |
| 저작자 작고 저작물(37명) | | 60 |

연구 결과

1. 저작물 현황분석

1) 대상저작물 현황

2014년 4월 9일을 기준으로 H대학교 의학학술정보관에서 소장중인 자료의 전체리스트를 관내 전산실을 통해서 전달받고, 전체리스트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리스트는 동양서, 서양서를 포함한 총 94,077권으로 단행본, 비도서, 연간물, 학위논문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우선 복본을 제외하기 위해 복본기호 c.2 이상인 자료를 일차로 제외하였고, 다음에 개인 연구논문인 학위논문과 개별 학회나 업체가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저널, 저작권 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비도서, 국제조약 위반의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의학학술정보관에서 소장중인 저작물중에서 독서함양과 인성교육을 위해 특화자료로 구입하고 있는 인문학도서는 순수의학 도서가 아니어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내부 회의와 관련 문헌 확인을 통해 의학 주제분야 이외의 자료는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판 DDC 분류번호 610 자료만 분석하기로 결정하고, 단행본으로 등록된 자료이지만 연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연감, 연보와 수시로 개정이나 수정이 발생하는 문제집, 조사기간 동안 대출이 되거나 구리자료실에 소장하고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도 제외하였다. 이후 리스트에 대한 여러 번의 검토와 확인과정을 통해 추가로 발견된 예외자료를 추가로 제외하고 최종적

표 2. 분류번호별 저작물 현황(DDC 610-619)

| DDC | 내용 | 권수 |
|---------|--|-------|
| 610 | Medicine and health | 76 |
| 610.1-9 | Standard subdivisions, medical personnel, nursing | 705 |
| 611 | Human anatomy, cytology, histology | 130 |
| 612 | Human physiology | 172 |
| 613 | Personal health and safety | 135 |
| 614 | Forensic medicine, incidence of injuries, public preventive medicine | 178 |
| 615 |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 384 |
| 616 | Diseases | 1,254 |
| 617 | Miscellaneous branches of medicine surgery | 545 |
| 618 | Other branches of medicine Gynecology and obstetrics | 205 |

으로 국내에서 출간된 단행본 3,784권(전체 단행본 대비 47.1%)을 대상으로 분석작업이 진행되었다. (표 1)을 통해 전체 대상에서 유형별로 제외된 저작물 현황과 최종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된 3,784권 가운데 인물DB와 웹 DB, 참고서지 등을 통해 파악된 생몰년이 있는 자료는 973권(대상저작물 대비 25.7%)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 저작자가 작고한 저작물은 37명 60권(대상저작물 대비 1.6%)이었다.

2) 분석저작물

(1) 주제분야별 저작물 현황: 분석저작물 3,784권을 DDC 22 ed.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전체 분석 저작물중에서 616번대 질병과 치료(diseases)가 가장 큰 분포(33.1%)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간호학 자료가 속해 있는 610.1-9대에 많은 자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16번 대를 세분해서 살펴보면(표 3 참조), 일반질병 및 치료에 가장 많은 자료가 분포되어 있고 신경 및 정신분야에도 저작물이 많이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분석사항만으로 전체 의학분야 저작물의 출판 및 저술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신경정신분야 자료가 많이 출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저작자 분석

가. 저자유형별 분석

저작자에 대한 분석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작물의 채기 원칙에 따라 유품정보원 정보를 주표기하였고, 저작물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표 3. 분류번호별 저작물 현황(DDC 616)

| DDC | 내용 | 권수 |
|-------------|--|-----|
| 616 | Diseases | 46 |
| 616.001-009 | Standard subdivisions | 13 |
| 616.01-09 | General topics of diseases | 373 |
| 616.1 | Diseases of cardiovascular system | 102 |
| 616.2 | Diseases of respiratory system | 50 |
| 616.3 | Diseases of digestive system | 90 |
| 616.4 | Diseases of hematopoietic, lymphatic, glandular system | 49 |
| 616.5 | Diseases of integument | 55 |
| 616.6 | Diseases of urogenital system | 52 |
| 616.7 | Diseases of musculoskeletal system | 56 |

한국학술정보원 종합목록에서 추가로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공동저작물은 3인까지 기록하였으며, 4인 이상의 공동 저작물은 3인까지 기록하고 대표저자를 제1저자로 기술하였다. 번역서의 경우는 원저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번역자만을 대상으로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3인의 공동번역자까지만 기록하였다. 기관이나 학회에서 주관해서 발행된 연구보고서나 세미나자료는 유품정보원에 있는 저작사항을 일차적으로 채기하였으나 별도의 연구자가 기록되지 않은 자료는 단체나 학회명을 정보원으로 채택하였다. 감수자의 경우도 저작물의 역할에 어느 정도 기여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히 저작사항이 기록되지 않고 감수자만 있는 경우는 감수자를 주저자로 채기하였다. (표 4)의 저자유형별 현황을 보면 총 5,120건의 저자역할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단체 및 기관이 저자역할을 한 경우는 1,100건(21.88%)으로, 개인저자는 4,020건(78.52%)으로 나타나 개인저자가 2.7배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저작형태별 분석

(표 5)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개인과 단체 저작물을 분석한 결과, 단체를 포함한 단독저작물의 경우는 2,922건(77.22%)이고 2인은 388건(10.25%)은, 474건은 (12.53%) 3인 이상 공동저작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인 이상의 공동저작물이 22.78%로 단독저작물이 공동 저작물보다 3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2인의 저작물보다 3인 이상의 저작물 비율이 많다는 점으로, 의학분야 저작물은 2인 보다는 3인 이상의 공동연구를 통한 저술활동이 더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저자유형별

| 저자유형 | 제1저자 | 제2저자 | 제3저자 이상 | 계 | 비율(%) |
|----------|-------|------|---------|-------|-------|
| 기관/단체/학회 | 1,085 | 13 | 2 | 1,100 | 21.48 |
| 개인 | 2,699 | 849 | 472 | 4,020 | 78.52 |
| 계 | 3,784 | 862 | 474 | 5,120 | 100 |

표 5. 저작형태별

| 저자유형 | 단독저자 | 공동저자(2인) | 공동저자(3인 이상) | 계 | 비율(%) |
|----------|-------|----------|-------------|-------|-------|
| 기관/단체/학회 | 1,072 | 11 | 2 | 1,085 | 28.67 |
| 개인 | 1,850 | 377 | 472 | 2,699 | 71.33 |
| 계 | 2,922 | 388 | 474 | 3,784 | 100 |
| 비율 (%) | 77.22 | 10.25 | 12.53 | | |

(표 6)은 저작물의 저작역할을 세부분석한 결과로, 저작물의 저술에 실질적으로 저나 저술로 표기된 저술역할과 편찬과 편집으로 기록된 편집의 역할, 연구보고서의 연구자역할, 감수자와 번역물의 번역자 역할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에서 보면 전체 저작물중에서 저술의 역할이 2,551건(49.82%)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으며, 번역서도 1,584건(30.93%)를 기록하여 의학분야 저작물에서 약 30% 이상이 번역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최신 기술과 실험 등이 요구되는 의학분야의 특성상 외국자료가 많이 출간되고 번역됨을 유추할 수 있다.

다. 기관/단체/학회 저자 분석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대학은 병원, 의료원, 단과대학 구분이 애매한 자료가 많아서 대학명을 저작자로 통일해서 표기하였고, 그 밖의 기관도 부서명이나 단위기관명이 아

닌 상위기관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관명이 변경된 기관은 신·구 기관명 모두를 대상으로 최신 명칭에 맞추어서 병기하였다. 개인이 아닌 기관/단체/학회에서 저작역할을 한 저작물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서울대학교가 83건으로 가장 많은 저작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순이었다. 한양대가 상위에서 기록된 것은 본교 교수의 저작물이나 출판물을 우선 구매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통적으로 의과대학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에서 저작활동을 한 저작물이 많음을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이외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 대학의 사협회, 대한간호협회에서 저작활동을 한 저작물이 가장 많이 입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개인저자 저작물 순위 분석

본 조사가 H대에 소장된 도서만을 대상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뢰도는 부족하지만, 개인저자 저작물의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표 8)과 같이 가장 많은 저작역할을 한 저자는 서울대 간호대학 김금순 교수로 저술 7회, 번역 6회를 포함하여 19회이고, 두 번째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피부과 안성구 교수, 세 번째는 마산대 물리치료학과 이한기 교수였다. 김금순 교수는 제 1저자뿐만 아니라 제 2저자에서도 여러 권의 저작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양한 저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재 및 신원정보 분석

가. 직업별 분석

개인이 저작역할을 한 4,020건의 리스트에서 중복되지

표 6. 저작세부역할별

| 역할구분 | 세부역할 | 건수 | 비율(%) |
|------|------|-------|-------|
| 번역 | 감수 | 17 | 1.99 |
| | 공동감수 | 85 | |
| | 계 | 102 | |
| | 감역 | 11 | 30.94 |
| | 공동감역 | 3 | |
| | 대표역 | 94 | |
| | 역 | 960 | |
| | 공역 | 465 | |
| | 편역 | 43 | |
| 연구 | 공편역 | 8 | |
| | 계 | 1,584 | |
| | 대표연구 | 2 | 2.56 |
| | 연구 | 61 | |
| | 공동연구 | 25 | |
| 저술 | 책임연구 | 43 | |
| | 계 | 131 | |
| | 저 | 1,615 | 49.82 |
| | 대표저자 | 121 | |
| | 공저 | 712 | |
| 편집 | 편저 | 84 | |
| | 공편저 | 19 | |
| | 계 | 2,551 | |
| | 대표편집 | 6 | 13.58 |
| | 편 | 670 | |
| 기타 | 공편 | 19 | |
| | 계 | 695 | |
| | 계 | 57 | 1.11 |
| | 계 | 5,120 | 100 |

표 7. 기관/단체/학회 저자 분석

| 기관/단체/학회명 | 빈도 |
|----------------------------|----|
|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포함) | 17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9 |
| 고려대학교(대학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포함) | 20 |
| 대한간호협회 | 17 |
| 대한의사협회 | 16 |
| 보건복지부(보건사회부 포함) | 10 |
| 서울대학교(대학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포함) | 83 |
| 울산대학교(아산병원 포함) | 10 |
| 연세대학교(대학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포함) | 55 |
| 의료정책연구소 | 18 |
| 한국약학대학협의회 | 15 |
| 한양대학교 | 62 |

표 8. 개인저자 저작물 순위

| 저자명 | 소속 | 제1저자 | | | 제2저자 | | 제3저자 | 빈도 |
|-----|---------|--------|----|---|------|---|------|----|
| | | 저 | 역 | 편 | 저 | 역 | 저 | |
| 김금순 | 서울대학교 | 간호대학 | 7 | 6 | 3 | 3 | | 19 |
| 김수관 | 조선대학교 | 치과대학 | 9 | | 3 | | | 12 |
| 김영설 | 경희대학교 | 의과대학 | 9 | | 1 | | | 10 |
| 김형묵 | 고려대학교 | 의과대학 | 7 | | 3 | | | 10 |
| 민영일 | 동국대학교 | 의과대학 | 7 | | 3 | | 1 | 11 |
| 박경한 | 강원대학교 | 의과대학 | 12 | | | | | 12 |
| 안성구 | 연세대학교 | 원주의과대학 | 5 | 7 | 1 | 1 | | 14 |
| 이은옥 | 서울대학교 | 간호대학 | 12 | | | | | 12 |
| 이중달 | 한양대학교 | 의과대학 | 10 | | | | | 10 |
| 이한기 | 마산대학교 | 물리치료학과 | 13 | | | | | 13 |
| 정문희 | 한양대학교 | 의과대학 | 9 | | 1 | | | 10 |
| 최명애 | 서울대학교 | 간호대학 | 9 | | 1 | | | 10 |
| 최영희 | 이화여자대학교 | 간호대학 | 7 | | 5 | | 1 | 13 |

표 9. 직업별 분석

| 직업 | 빈도 | 직업 | 빈도 |
|----------|-------|-----|-------|
| 간호사 | 15 | 약사 | 21 |
| 교수(강사포함) | 1,022 | 연구원 | 77 |
| 기업인 | 13 | 의사 | 1,185 |
| 번역가 | 50 | 한의사 | 27 |

나 저자의 직업을 파악할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직업항목은 1차적으로 해당 저작물, 언론사(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경)인물DB, 포털(네이버, 다음), 관련 학회 및 단체 순으로 검색하여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직업명은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는 대신 통상적인 직업명을 부기하되, 동일 직업의 다른 명칭은 하나로 통일하였다. 다만, 의과대학 소속의 간호학과 교수는 교수로 분류하고 임상, 기초 의학교수들은 구분이 애매한 관계로 의사로 분류하였다. 강사로 표기된 저작자는 교수군에 포함시켰으며 한의사와 한의과대 교수는 한의사로 명명하고,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직업란을 명기한 저작자는 첫 번째 직업을 우선 채택했다. 결과를 보면, 의사와 교수 직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직업이 전체 직업으로 파악된 저작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시된 직업 이외로는 박사, 교사, 방사선사, 법조인, 언론인, 임상심리학자, 헬스트레이너, 영양사, 평론가, 응급구조사, 작가 등이 기타 직업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소속기관별 분석

| 기관명 | 빈도 | 기관명 | 빈도 |
|---------|-----|-----------|----|
| 서울대학교 | 378 | 대한간호협회 | 24 |
| 연세대학교 | 238 | 부산대학교 | 23 |
| 한양대학교 | 168 | 한림대학교 | 23 |
| 가톨릭대학교 | 105 | 원광대학교 | 21 |
| 경희대학교 | 10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 |
| 고려대학교 | 81 | 전북대학교 | 17 |
| 이화여자대학교 | 67 | 마산대학교 | 16 |
| 인제대학교 | 43 | 한국약학대학협의회 | 15 |
| 울산대학교 | 32 | 대구보건대학교 | 14 |
| 전남대학교 | 32 | 보건복지부 | 14 |
| 중앙대학교 | 31 | 을지대학교 | 13 |
| 성균관대학교 | 30 | 인하대학교 | 13 |
| 아주대학교 | 30 | 동국대학교 | 11 |
| 순천향대학교 | 29 | 우석대학교 | 11 |
| 계명대학교 | 27 | 대한의약협회 | 10 |
| 의료정책연구소 | 26 | 동아대학교 | 10 |
| 조선대학교 | 25 | | |

-대학은 학부, 대학원 포함

-부속병원 소속은 대학에 포함

-기관명 변경 시 이전 기관포함

나. 소속기관별 분석

소속기관별로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서울대가 378회로 1위를 차지하고, 다음은 연세대(14%), 한양대(9.9%)순이었다. 분석결과는 부분적으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단체저자 역할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부속병원의 수가 많거나 의과대학의 규모가 큰 기관 소속자들

이 대체로 많은 저작물을 발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출신학교별 분석

출신학교별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지만, 저작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대학원 졸업의 경우는 확인하기가 어려워 출신대학 분석은 학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1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출신이 월등하게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라. 출신학교 전공별 분석

졸업시의 전공이나 단과대학이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공은 대학별로 학제나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기가 어려워서 임의로 계열별로 구분하였으며, 의학저작물의 전공구분을 위해 의학, 치과, 간호학, 한의학, 약학, 보

표 11. 출신학교별 분석

| 대학명 | 빈도 | 대학명 | 빈도 |
|---------|-----|----------|----|
| 서울대학교 | 400 | 성균관대학교 | 32 |
| 연세대학교 | 198 | 중앙대학교 | 29 |
| 경희대학교 | 79 | 전남대학교 | 25 |
| 고려대학교 | 68 | 조선대학교 | 24 |
| 이화여자대학교 | 56 | 한국외국어대학교 | 14 |
| 경북대학교 | 51 | 원광대학교 | 12 |
| 가톨릭대학교 | 46 | 건국대학교 | 9 |
| 한양대학교 | 38 | 순천향대학교 | 7 |
| 부산대학교 | 32 | 인제대학교 | 4 |

-학부졸업 기준

전계열은 별도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표 1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의학전공자들이 가장 많은 수가 있었고, 치과, 간호학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나타냈는데,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의학관련 저작물을 출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 현재 전공분야 분석

졸업시의 전공이 아닌 현재 시점의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간호학 관련 저작물이

표 12. 출신학교 전공별 분석

| 전공계열(과) | 빈도 |
|-------------------------------|-----|
| 의학계열 | 513 |
| 치과계열 | 130 |
| 간호계열 | 113 |
| 어문계열(국어, 노어, 독어, 영어) | 49 |
| 약학계열 | 42 |
| 보건계열(보건, 임상병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 38 |
| 한의학계열 | 37 |
| 인문계열(사학, 심리, 철학, 도서관학, 소비자학) | 31 |
| 자연계열(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지질) | 22 |
| 공학계열(컴퓨터, 토목, 기계, 화학, 환경, 전기) | 19 |
| 체육계열 | 14 |
| 사회계열(사회, 신방, 관광) | 12 |
| 경영경상계열(경영, 경제) | 10 |
| 가정학계열(가정, 식영) | 7 |
| 사범계열(교육학) | 7 |
| 법학계열 | 6 |
| 수의학계열 | 5 |
| 농학계열 | 4 |
| 교육계열 | 3 |

표 13. 현재 전공분야 분석

| 전공분야 | 빈도 | 전공분야 | 빈도 | 전공분야 | 빈도 |
|----------------|-----|-------|----|-----------|----|
| 간호(임상간호)학과 | 320 | 산부인과 | 27 | 응급의학(구조)과 | 13 |
| 치(의학)과 | 122 | 정형외과 | 27 | 예방의학과 | 12 |
| 내과 | 102 | 마취과 | 22 | 생물(생명과학) | 11 |
| 물리치료과 | 55 | 가정의학과 | 20 | 신경과 | 11 |
| 정신과 | 48 | 성형외과 | 20 | 영상의학과 | 11 |
| 약학(약리)(제약)과 | 46 | 이비인후과 | 20 | 비뇨기과 | 9 |
| 피부과 | 46 | 재활의학과 | 18 | 생화학 | 9 |
| 보건(의료)관리 (행정)과 | 37 | 신경외과 | 17 | 소화기내과 | 9 |
| 해부학과 | 37 | 한의학과 | 17 | 사회복지과 | 8 |
| 방사선과 | 32 | 흉부외과 | 16 | 심리학 | 8 |
| 외과 | 32 | 내분비내과 | 15 | 작업치료학과 | 8 |
| 임상병리과 | 31 | 체육학과 | 15 | 치기공(위생)과 | 8 |
| 소아과 | 29 | 안과 | 14 | | |

단독저자보다는 공동저자의 저작물이 많이 있어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내과, 물리치료학과, 정신과, 약학, 피부과, 보건관련학과 순으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4) 출판정보 분석

가. 출판년도별 분석

저작물을 출판한 출판년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표 14)와 같이 2005~2009 사이에 출판된 저작물이 가장 많고 2010~2014년 사이에 출간된 저작물도 두 번째를 차지하여 신간저작물의 구입과 비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출판사별 분석

저작물을 출판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작업에서는 군자출판사가 289회, 수문사 159회, 고려의학 156회로, (표 15)에서 대부분의 의학저작물은 저작물의 특성상 전문 출판사에서 많이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생몰년 확인 저작물

전체 저작물 3,784권 분석과는 별도로 인물DB, 웹정보, 참고서지, 인터넷 기사 등에서 저작자의 생몰년이 확인된 저작물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생몰년이 확인된 저작물은 저작물 권리관리정보를 작성하거나 정보를 입력할 때 필수입력 사항이 될 수 있고, 실제 저작물이 만료저작물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이기 때문에 생몰년이 확인된 저작물 973권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표 14. 출판년도별 분석

| 연대 | 책수 | 연대 | 책수 |
|-----------|-----|-----------|-------|
| 1950~1954 | 1 | 1985~1989 | 198 |
| 1955~1959 | 0 | 1990~1994 | 323 |
| 1960~1964 | 2 | 1995~1999 | 363 |
| 1965~1969 | 11 | 2000~2004 | 553 |
| 1970~1974 | 28 | 2005~2009 | 1,418 |
| 1975~1979 | 62 | 2010~2014 | 699 |
| 1980~1984 | 115 | | |

(1) 저작자 분석

가. 저작자 성씨별 분석

생몰년이 확인된 저작물 973권 중에서 개인 저작물만을 추출하여 저작자의 성씨를 분석한 결과 (표 16)과 같이 ‘한국의 성씨’와 마찬가지로 김, 이, 박씨 순으로 저작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생몰년 분석

생몰년이 확인된 저작물을 연대순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그림에서는 1950~1959년대 출생한 저작자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54~1955년에 태어난 저작자의 저작물이 거의 100건이 가까워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물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중견 위치에 있는 저작자들이 경륜과 시간상 많은 저작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베이비부머 시대의 다산에 따른 인구밀도로 동년대에 저작자가 많이 분포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소재 및 신원정보 분석

가. 소속기관별 분석

소속기관별 및 대학별로 분석된 결과는 (표 18~20)과

표 15. 출판사별 분석

| 출판사 | 빈도 | 출판사 | 빈도 |
|----------|-----|-----------|----|
| 군자 | 289 | 일조각 | 51 |
| 수문사 | 159 | 한미의학 | 46 |
| 고려의학 | 156 | 高文社 | 45 |
| 현문사 | 139 | 가본의학 | 42 |
| 서울대학교 | 109 | 아카데미아 | 39 |
| 정담 | 8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5 |
| 신광 | 79 | 신일북스 | 32 |
| 대한의학서적 | 75 | 대한간호협회 | 30 |
| 한양대학교 | 69 | 정문각 | 30 |
| 이퍼블릭 | 66 | 하나의학사 | 29 |
| 연세대학교 | 65 | 대한의학협회 | 27 |
| 신흥메드싸이언스 | 63 | 청구문화사 | 26 |
| 대학서림 | 6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5 |
| 영문 | 56 | 과학기술부 | 25 |
| 계죽문화사 | 51 | 한국의학 | 25 |
| 대한나래 | 51 | | |

표 16. 성씨별 분석

| 성 | 김 | 이 | 박 | 정 | 최 | 강 | 조 | 고 | 권 | 홍 | 신 | 유 | 서 | 안 | 임 | 송 | 정 | 백 | 윤 |
|----|-----|-----|----|----|----|----|----|----|----|----|----|----|----|----|----|----|---|---|---|
| 빈도 | 218 | 148 | 66 | 41 | 40 | 35 | 30 | 21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 | |

표 17. 생몰년 분석-출생연도별

| 1920년 이전 | | 1920~1929 | | 1930~1939 | | 1940~1949 | | 1950~1959 | | 1960~1969 | | 1970~1979 | | 계 | |
|----------|----|-----------|----|-----------|----|-----------|-----|-----------|-----|-----------|-----|-----------|----|-----|--|
| 연도 | 빈도 | 연도 | 빈도 | 연도 | 빈도 | 연도 | 빈도 | 연도 | 빈도 | 연도 | 빈도 | 연도 | 빈도 | | |
| 1896 | 1 | 1920 | 3 | 1930 | 8 | 1940 | 13 | 1950 | 28 | 1960 | 35 | 1970 | 2 | | |
| 1906 | 1 | 1921 | 6 | 1931 | 5 | 1941 | 27 | 1951 | 23 | 1961 | 37 | 1971 | 2 | | |
| 1913 | 1 | 1922 | 5 | 1932 | 12 | 1942 | 12 | 1952 | 37 | 1962 | 17 | 1972 | 2 | | |
| 1916 | 1 | 1923 | 7 | 1933 | 8 | 1943 | 23 | 1953 | 42 | 1963 | 32 | 1973 | | | |
| 1917 | 1 | 1924 | 4 | 1934 | 5 | 1944 | 19 | 1954 | 55 | 1964 | 27 | 1974 | | | |
| 1918 | 2 | 1925 | 7 | 1935 | 15 | 1945 | 26 | 1955 | 43 | 1965 | 19 | 1975 | 1 | | |
| 1919 | 2 | 1926 | 8 | 1936 | 10 | 1946 | 17 | 1956 | 35 | 1966 | 5 | 1976 | | | |
| | | 1927 | 4 | 1937 | 8 | 1947 | 33 | 1957 | 36 | 1967 | 11 | 1977 | | | |
| | | 1928 | 4 | 1938 | 11 | 1948 | 36 | 1958 | 32 | 1968 | 6 | 1978 | | | |
| | | 1929 | 7 | 1939 | 13 | 1949 | 36 | 1959 | 40 | 1969 | 5 | 1979 | | | |
| 계 | 9 | | 55 | | 95 | | 242 | | 371 | | 194 | | 7 | 973 | |

표 18. 소속기관 유형별 분석

| 대학(부속병원포함) | | | | | | | | | | 개인 병(의)원 | 기업 | 학회 (협회) | 기관 (연구소) | 출판사 | 계 | 합계 |
|------------|-----|-----|-----|----|-----|----------|-----|-----|----|-------------|----|------------|-------------|-----|-----|----|
|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 간호학 | 약학 | 수의학 | 보건 계열 | 기타 | 계 | | | | | | | | |
| 515 | 60 | 14 | 117 | 13 | 3 | 73 | 138 | 933 | 22 | 2 | 2 | 10 | 1 | 37 | 970 | |

표 19. 소속기관별 분석

| 서울대 | 연세대 | 가톨릭대 | 경희대 | 고려대 | 한양대 | 울산대 | 이화여대 | 인제대 | 순천향대 | 성균관대 |
|-----|-----|------|-----|-----|-----|-----|------|-----|------|------|
| 132 | 122 | 53 | 50 | 37 | 36 | 27 | 25 | 24 | 19 | 18 |
| 경북대 | 중앙대 | 아주대 | 전남대 | 계명대 | 한림대 | 부산대 | 전북대 | 인하대 | 계 | |
| 18 | 16 | 15 | 14 | 13 | 13 | 12 | 11 | 11 | 666 | |

표 20. 의과대학 소속 대학별 분석

| 서울대 | 연세대 | 가톨릭대 | 한양대 | 고려대 | 울산대 | 경희대 | 순천향대 | 인제대 | 성균관대 | 중앙대 |
|-----|------|------|-----|-----|-----|-----|------|-----|------|-----|
| 92 | 88 | 49 | 27 | 24 | 24 | 19 | 17 | 15 | 15 | 14 |
| 경북대 | 이화여대 | 아주대 | 한림대 | 전북대 | 전남대 | 인하대 | 계명대 | 영남대 | 계 | |
| 12 | 12 | 12 | 11 | 8 | 7 | 7 | 6 | 6 | 465 | |

같다. (표 20)은 생몰년이 확인된 저작물 중에서 순수 의과대학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분석대상 전체 저작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현재 전공분야별 분석

소속기관이 확인된 저작자를 현재 전공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전체 저작물의 현재 전공분야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간호학, 내과, 치과 전공자들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전공으로 피부미용, 유아교육, 사학, 레저스포츠 등의 다양한 전공자들이 저작자로 확인되었다.

표 21. 현재 전공분야별 분석

| 전공 | 제1 저자 | 제2 저자 | 제3 저자 | 계 | 전공 | 제1 저자 | 제2 저자 | 제3 저자 | 계 | 전공 | 제1 저자 | 제2 저자 | 제3 저자 | 계 |
|----------------|-------|-------|-------|-----|-------------|-------|-------|-------|----|-------------|-------|-------|-------|-----|
| 간호(임상간호)학과 | 144 | 13 | 9 | 166 | 생화학 | 5 | | | 5 | 재활의학과 | 13 | 1 | | 14 |
| 가정의학과 | 13 | 1 | | 14 | 성형외과 | 15 | 2 | | 17 | 작업치료학과 | 5 | 2 | 1 | 8 |
| 기생충학과 | 6 | | 1 | 7 | 소아과 | 16 | 1 | | 17 | 정신과 | 30 | 2 | 2 | 34 |
| 내과 | 69 | 8 | 1 | 78 | 소화기내과 | 3 | | 1 | 4 | 정형외과 | 23 | | | 23 |
| 내분비내과 | 5 | | | 5 | 수의학 | 2 | 1 | | 3 | 진단검사의학과 | 6 | | | 6 |
| 마취과 | 17 | | | 17 | 식품영양(생명)학과 | 6 | | | 6 | 체육학과 | 6 | | | 6 |
| 물리치료과 | 28 | 2 | 2 | 32 | 신경과 | 10 | 1 | | 11 | 치과 | 71 | 8 | 5 | 84 |
| (미)생물과 | 10 | 1 | | 11 | 신경외과 | 15 | 2 | | 17 | 치기공(위생)과 | 6 | | | 6 |
| 방사선과 | 19 | 2 | 1 | 22 | 심리학 | 6 | 3 | | 9 | 피부과 | 17 | 1 | 1 | 19 |
| 법학과 | 3 | | | 3 | 안과 | 11 | 1 | | 12 | 한의학과 | 14 | | 1 | 15 |
| 병리(임상)과 | 18 | 2 | 1 | 21 | 약학(약리)(제약)과 | 26 | 4 | 3 | 33 | 해부학과 | 24 | 1 | | 25 |
| 병원경영(관리)과 | 3 | | | 3 | 영상의학과 | 8 | | | 8 | 핵의학과 | 2 | | | 2 |
| 보건(의료) 관리(행정)과 | 19 | 6 | 4 | 29 | 예방의학과 | 11 | 1 | | 12 | 호흡기내과 | 4 | | | 4 |
| 비뇨기과 | 5 | | | 5 | 외과 | 18 | 2 | | 20 | 흉부외과 | 8 | 1 | | 9 |
| 사회복지과 | 7 | | | 7 | 응급의학(구조)과 | 10 | 1 | | 11 | 기타(피부미용...) | 57 | 11 | 2 | 70 |
| 산부인과 | 19 | | | 19 | 이비인후과 | 12 | 1 | 2 | 15 | 계 | 850 | 83 | 37 | 970 |
| 생리학과 | 5 | 1 | | 6 | 작업치료학과 | 5 | 2 | 1 | 8 | | | | | |

4) 작고 저작물

생몰년이 확인된 저작물 중에서 37명 60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이다. 이 중에서 단독 저작물은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익년부터 70년까지, 공동저작물은 최후 사망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이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자의 사망이 확인된 작고저작물은 사후 70년이 되는 시점에 만료저작물로 편입되어,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유저작물이 되므로 만료시기를 포함한 저작물정보 및 저작자 정보를 검색하고 알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이용자는 법의 저촉여부를 고민할 필요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작고자의 사망년도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네이버 인물DB 뿐만 아니라 한국대학연감, 보건인명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명부 등의 참고서지, 인터넷 기사의 부음란과 학회의 유고집 등을 통해 최종 생몰년을 확인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작고저작자의 연대별로 연대기를 만들어서 동일한 시대의 사망자 및 저작권 만료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 저작자 분석

가. 저작자 출생연도별 분석

작고한 저작자 37명에 대한 생몰년을 출생년도와 작고연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22, 23)과 같다. 최고

연장자는 1896년에 출생하였으며, 최소는 1961년 출생자였다. 작고연도는 최근 2010~2014년에 돌아가신 분이 많았으며, 연도별로는 1997년에 다섯 분이 돌아가셔서 가장 많이 작고하셨고, 2004년과 2014년에 세 분이 돌아가셨다.

나. 저작역할별 분석

작고한 저작자의 저작역할별 분석은 (표 24)과 같다. 감수는 의학용어사전 편찬에서 감수자로의 역할을 한 경우이고, 전체 저작물 분석과 마찬가지로 저술역할의 저작물이 73.6%이상이고, 단독저자가 88.3%,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은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재 및 신원정보 분석

작고저작자를 소속기관 및 전공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5, 26)과 같다. 작고저작자도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연세대, 가톨릭대 순이었다. 단과대학별로는 의과대학 출신이 압도적이었으나 의외로 가정대학 출신도 3명이 있었다. 현직 시에 전공별은 내과, 약리학, 예방의학 순이었다.

2. 저작물 권리관리 DB 구축

1) 저작물 권리관리 데이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저작권

표 22. 저작자 출생연도별 분석

| 1920년 이전 | | | 1920~1929 | | | 1930~1939 | | | 1940~1949 | | | 1950~1959 | | |
|----------|---------------|------------|-----------|---------------|------------|-----------|---------------|------------|-----------|---------------|--------------|-----------|---------------|------------|
| 성명 | 생몰년 | 소속 | 성명 | 생몰년 | 소속 | 성명 | 생몰년 | 소속 | 성명 | 생몰년 | 소속 | 성명 | 생몰년 | 소속 |
| 김두종 | 1986~ 1988 | 서울대 의대 | 고광욱 | 1926~ 1997 | 서울대 의대 | 고창순 | 1932~ 2012 | 서울대 의대 | 강진경 | 1949~ 2004 | 연대 의대 | 이원상 | 1951~ 2014 | 연대 의대 |
| 이우주 | 1918~ 1997 | 연대 의대 | 기창덕 | 1924~ 2000 | 치과 의원 | 김건수 | 1937~ 2010 | 경기대 예체 | 강충남 | 1940~ 2003 | 이화여대 의대 | | | |
| 전종휘 | 1913~ 2007 | 인제대 의대 | 김기령 | 1926~ 2011 | 연대 의대 | 김정진 | 1930~ 2011 | 가톨릭대 의대 | 김성수 | 1945~ 2006 | 신구대학 방사선과 | | | |
| 정일천 | 1906~ 1993 | 가톨릭대 의대 | 김중명 | 1922~ 1994 | 경북대 의대 | 김진복 | 1933~ 2005 | 서울대 의대 | 서문자 | 1945~ 2004 | 서울대 간호대 | | | |
| 주정균 | 1919~ 1998 | 경희대 의대 | 김채원 | 1926~ 2014 | 연대 의대 | 원치규 | 1933~ 2010 | 한 대 의대 | 임성삼 | 1940~ 2014 | 서울대 치과대 | | | |
| 차영선 | 1916~ 2003 | 고대 의대 | 임정규 | 1929~ 1997 | 서울대 의대 | 윤덕노 | 1933~ 2009 | 서울대 의대 | | | | 1960~1969 | | |
| | | | 백영한 | 1927~ 1997 | 서울대 의대 | 이동우 | 1935~ 사망 | 연대 의대 | | | | 성명 | 생몰년 | 소속 |
| | | | 서병설 | 1921~ 1991 | 인하대 의대 | | | | | | | 이원용 | 1961~ 2011 | 성균관대 의대 |
| | | | 서순규 | 1921~ 1995 | 인제대 의대 | | | | | | | | | |
| | | | 이근수 | 1923~ 1994 | 한 대 의대 | | | | | | | | | |
| | | | 이기열 | 1924~ 2013 | 연대 가정대 | | | | | | | | | |
| | | | 전산초 | 1921~ 1999 | 연대 의대 | | | | | | | | | |
| | | | 조규상 | 1925~ 2013 | 가톨릭대 의대 | | | | | | | | | |
| | | | 홍사석 | 1925~ 2013 | 가톨릭대 의대 | | | | | | | | | |
| | | | 홍종관 | 1925~ 1997 | 순천향 의대 | | | | | | | | | |

법에서는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조항을 두어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2012.10.13.부터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작권자 조회공고 등 법정허락 관련 내용이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찾기 사이트[13]에 게시됨으로써 이전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저작권자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이용자들은 법적인 조항이나 절차, 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실제 사이트의 인지와 이용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축적한 저작물관련 권리정보 등이 부재하다 보니 법정허락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할 수가 없고 절차나 과정에

대하여 느끼는 복잡함과 어려움으로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제한적이다. 실제 권리자찾기 사이트에서는 의학분야 관련 저작권자 찾기를 위한 노력이나 법정허락을 신청한 저작물을 찾기가 어려웠다.

지금까지 저작물 분석결과에 따라 서지정보에서 추출한 정보이외에 저작물의 유형, 저작관계, 만료연도, 저작자역할, 생몰년, 출신대학, 학부전공, 현재 전공분야, 직업, 출판정보 등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권리 확인할 수 있는 데 이터를 정리하여 종합한 결과가 (표 27)이다. 표에서는 저작자정보(저술의 형식과 역할, 저작자의 출신학교와 이수

표 23. 저작자 작고연도별 분석

| 1980~1989 | | | 1990~1999 | | | 2001~2009 | | | 2010~2014 | | |
|-----------|------|---------------|-----------|------|----------------|-----------|------|-----------------|-----------|------|----------------|
| 성명 | 작고연도 | 소속 | 성명 | 작고연도 | 소속 | 성명 | 작고연도 | 소속 | 성명 | 작고연도 | 소속 |
| 金斗鍾 | 1988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서병설 | 1991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 기창덕 | 2000 | 기창덕치과 의원 | 金健洙 | 2010 | 경기대학교 체육대학 |
| | | | 鄭壹千 | 1993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姜忠男 | 2003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元致奎 | 2010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 | | | 林定圭 | 1993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차영선 | 2003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金基鈴 | 2011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 | | | 金重明 | 1994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 강진경 | 2004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이원용 | 2011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
| | | | 李謹洙 | 1994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서문자 | 2004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고창순 | 2012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 | | | 徐舜圭 | 1995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 李文鎬 | 2004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李琦烈 | 2013 | 연세대학교 가정학과 |
| | | | 고광욱 | 1997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金鎮福 | 2005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조규상 | 2013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 | | | 白永漢 | 1997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 김성수 | 2006 | 신구대학 방사선과 | 김채원 | 2014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 | | | 蔡範錫 | 1997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李宇柱 | 2007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이원상 | 2014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 | | | 홍사석 | 1997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全鍾暉 | 2007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 임성삼 | 2014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
| | | | 洪鍾寬 | 1997 |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 尹德老 | 2009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김정진 | 미확인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 | | | 朱鼎均 | 1998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 | | | 이동우 | 미확인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 | | | 전산초 | 1999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 | | | | |

표 24. 저작역할별 분석

| 역할 | 단독저자 | 2인 저자 | 3인 이상 저자 | 계 |
|------|------|-------|----------|----|
| 감수 | 1 | | | 1 |
| 역 | 1 | | | 1 |
| 공역 | | 1 | | 1 |
| 공저 | | 4 | 2 | 6 |
| 저 | 42 | | | 42 |
| 책임저자 | 2 | | | 2 |
| 편 | 14 | | | 14 |
| 공편 | | 1 | | 1 |
| 책임저자 | 2 | | | 2 |
| 계 | 60 | 6 | 2 | 68 |

전공, 저작자의 직업과 소속기관, 현재전공분야, 생몰년), 저작물정보(서명, 번역서여부), 출판정보(출판사, 출판년도), 저작물의 만료연도 등의 기초 데이터를 기록하여 디지털 복제를 위한 권리관계 파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작물의 만료연도는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보호기간³⁾을 기산하여 제시되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표 27)에서 보는 바와

3)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표 25. 작고저작물-소속기관별 분석

| 소속 대학 | 가톨릭 대 | 경기대 | 경북대 | 경희대 | 고려대 | 서울대 | 성균관 대 | 순천향 대 | 신구 대학 | 연세대 | 울산대 | 이화 여대 | 인제대 | 인하대 |
|-------|-------|-----|-----|-----|-----|-----|-------|-------|-------|-----|-----|-------|-----|-----|
| 빈도 | 3 | 1 | 1 | 1 | 1 | 10 | 1 | 1 | 1 | 9 | 1 | 1 | 2 | 1 |

표 26. 작고저작물-현직 전공별 분석

| 전공별 | 가정학 | 내과 | 방사선과 | 병리 (임상)과 | 보건(의료) 관리 | 생리학 | 소아과 | 신경과 | 약리학 | 영양학 | 예방 의학과 | 외과 | 의사학 | 이비 인후과 |
|-----|-----|----|------|-------------|--------------|-----|-----|-----|-----|-----|-----------|----|-----|-----------|
| 빈도 | 1 | 5 | 1 | 1 | 1 | 2 | 2 | 1 | 3 | 1 | 3 | 2 | 1 | 2 |

표 27. 저작물 권리관리데이터

| 성명 | 작고 년도 | 만료 연도 | 소속 | 전공 | 서명 | 역할 | 제2 저자 | 제3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
| 金斗鍾 | 1988 | 2059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의사학 | 韓國醫學史 : 全 | 저 | | | 인제연구장학재단 | 1981 |
| 서병설 | 1991 | 2062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 기생중학 | 열대풍토병 | 편저 | | | 漢陽大學校 醫科大學 外科學教室 | 1987 |
| 鄭壹千 | 1993 | 2064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해부학 | 기본 조직학 | 저 | | | 한국메디칼인덱스사 | 1977 |
| 林定圭 | 1993 | 2064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약리학 | Goodman and Gilman's 藥物治療 | | | | 대학서림 | 1990 |
| 金重明 | 1994 | 2065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 병리학 | 醫史學概論 | 저 | | | 아카데미서적 | 1979 |
| 李謹洙 | 1994 | 2065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소아과 | (松軒 李謹洙 教授) 華甲紀念論文集 | 저 | | | 군자 | |
| 徐舜圭 | 1995 | 2066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 내과 | 成人病. 老人病學 | 저 | | | 一潮閣 | 1992 |
| 고광욱 | 1997 | 2068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소아과 | (症例中心의)小兒科學 | 저 | | | 高文社 | 1985 |
| 白永漢 | 1997 | 2068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 기생중학 | 醫學史概論 | 저 | | | 군자출판사 | 1991 |
| 蔡範錫 | 1997 | 2068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영양학 | 病院營養學 | 저 | | | 高文社 | 1989 |
| 홍사석 | 1997 | 2068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약리학 | (이우주의)약리학강의 | 편 | | | 푸른솔 | 2005 |
| 洪鍾寬 | 1997 | 2068 |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 예방의학 | 保健 · 社會關係法規 | 편 | | | 瑞典出版社 | 1988 |
| 朱鼎均 | 1998 | 2069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 기생중 | 人體寄生蟲學 | 저 | | | 가톨릭산업의학센타 | 1982 |
| 전산초 | 1999 | 2070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학 | 성인 간호학 | 저 | | | 대한의학협회 | 1986 |
| 기창덕 | 2000 | 2071 | 기창덕치과의원 | 치과 | 韓國齒科醫學史 : 上 | | | | 壽文社 | 1979 |
| 姜忠男 | 2003 | 2074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정형외과 | 骨折과 脫臼의 治療 | 저 | | | 아카데미아 | 1979 |
| 차영선 | 2003 | 2074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생리학 | 인체생리학 | 저 | | | 國立醫療院 小兒科 | 1971 |
| 강진경 | 2004 | ?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내과 | 담석증 | | 민병철 | | | 1999 |
| 서문자 | 2004 | 2075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학 | 성인간호학 . 上 | | | | 중앙문화 진수 출판사 | |
| 李文鎬 | 2004 | 2075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내과 | 臨床核醫學 | 저 | | | 壽文社 | 1982 |

같이 강진경 저작자의 경우는 작고하였으나 공동저작자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료연도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번 분석과정에서 확인된 973권의 권리관리정보는

다시 한번 검증과 확인과정을 거쳐서 (표 27)와 같이 데이터화하여, 저작물의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저작물 권리관리 정보

도서관 디지털화와 저작권에 관련된 광범위한 도전은 고아저작물 이슈였다. 구글의 프로젝트는 도서를 망라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으로 저작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공유저작물에서부터 현재 보호되어 있어 이용허락이 필요한 저작물까지 포괄하고 있다. 구글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는 저작권 권리처리 문제가 관건이었다. 구글이 현재까지 스캔한 도서가 3,000만 권이라는 루머[14]가 있고, 디지털화한 도서의 약 70~75%가 저작권이 있으나 절판상태의 저작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 고아저작물로

간주되며[15], 앞으로 스캔 예정인 도서가 약 1억 권이라고 예측[16]되고 있다. 영국도서관 소장 저작물중에서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약 40%는 고아저작물로 추정하고 있으며[17], 영국정부는 독립적인 조사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The Regulatory Policy committee)를 통해 고아저작물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고아저작물 입법화를 위한 EU Directive를 통과시켰다[18]. 구글과 더불어 세계 도서관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는 HathiTrust Digital Library는 북미지역 연구도서관 저작물의 50% 이상을 디지털화하고 세계 80여 도서관에 문호를 개방하여[14] 자

표 28.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 | | 金斗鐘 | | 김성수 | | 김대봉 | |
|-------|----------|---------|----------------------------|--------|------------------|--------|-----------|
| 1 | 저작물 유형 | 출생연도 | 1986 | 출생연도 | 1945 | 출생연도 | 1908 |
| | | 사망연도 | 1988 | 사망연도 | 2006 | 사망연도 | 1943 |
| | | 직업 | 의사 | 직업 | 교수 | 직업 | 시인 |
| | | 소속 | 서울대 의과대학 | 소속 | 신구대학 방사선과 | 소속 | |
| | | 저작물 유형 | 저작권보호저작물 | 저작물 유형 | 저작권보호저작물 | 저작물 유형 | 만료저작물 |
| | 서명 | 서명 | 韓國醫學史 : 全 | 서명 | 방사선영상학 | 서명 | 방학 |
| | 출판사 | 출판사 | 인제연구장학재단 | 출판사 | 의학출판사 | 출판사 | |
| | 출판년 | 출판년 | 1981 | 출판년 | 2006 | 출판년 | 1938 |
| 공동 저자 | | 공동 저자 | | 문화석 |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 공동 저자 | |
| | | | | 박종배 | 주성대학 방사선과 | | |
| 만료연도 | 2059 | 만료연도 | ? | 만료연도 | 1994 | 만료연도 | |
| | | 문화체육관광부 | | 한성숙 | | 김선 | |
| 1 | 저작물 유형 | 게시일 | 2014.10.10 | 출생연도 | 1956 | 출생연도 | |
| | | 담당부서 | 총무2담당관 | 사망연도 | - | 사망연도 | |
| | | 담당자 | 정재수 | 직업 | 화가 | 직업 | 수필가 |
| | | 소속 | 문화체육관광부 | 소속 | | 소속 | |
| | | 저작물 유형 | 1 | 저작물 유형 | 저작물이용허락표시 저작물 | 저작물 유형 | 기증저작물 |
| | 서명 | 작품명 | 2014년도 공직자 종 교차별예방 업무편람 | 작품명 | 시선 2010-S4 | 서명 | 보이지 않는 재산 |
| | 라이센스유형 | 라이센스유형 | OPEN | 라이센스유형 | CC BY NC ND | 출판사 | |
| 형태 | PDF파일 자료 | 이미지 | | | | 출판년 | |
| | | | | | | 공동 저자 | |
| | | | | | | 만료연도 | |

료의 디지털화와 고아저작물 문제 해결에 대처하고 있다. HathiTrust의 회원기관인 미국 미시간대학은 오래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만약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Orphan Works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19].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법의 공익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20]과 같이, 세계적으로는 위와 같이 고아저작물의 공적 접근과 이용을 위해 고아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고아저작물의 잠재적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쉽게 저작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아저작물 문제를 가장 먼저 인식한 EU는 고아저작물 문제는 이용자가 저작물이나 저작권자와 관련한 권리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나 저작권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축적한 저작물관련 권리정보 DB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U는 2007년 도서관, 출판사협회, 저작자, 복사권단체, 기술개발자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저작물 권리정보 DB인 ARROW (Accessible Registries of Rights Information and Orphan Works toward Europeana) [21]를 출범하고 현재 권리정보를 구축하고 있다[6]. 이와는 별도로 EU는 산하기관인 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을 통해 회원국의 도서관, 교육기관, 박물관, 고문서관, 미디어센터, 공영방송국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아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고아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22].

(표 28)은 EU의 ARROW와 같이 지금까지 의학분야 저작물을 분석해서 축적한 저작물과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작물의 권리유형과 공동저작물까지 확인할 있도록 설계한 저작자별 저작물권리관리DB 예시이다. 표에서는 저작자별로 저작자의 소재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하고 이용자가 저작물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작물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면, ‘저작권보호저작물’로 표시하고 단독이나 공동저자이더라도 사망연도가 확인되어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알 수 있으면, 만료연도를 제시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23]’이나 한국문화정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누리[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도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어서 별도로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저작자가 적용한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인 경우는 ‘저작물이용허락표시저작물(CCL)’로, 저작자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기증한 저작물인 경우는 ‘기증저작물’로 표시되었다. 저작자가 여러 저술활동을 한 경우는 저작물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저작물인 경우는 상호참조나 링크를 연결하여 저작자간의 검색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파일형태인 경우는 파일형식을 알려 주고, 이미지나 그림인 경우는 해당 저작물의 이미지나 그림을 게재하여, 확인과 이해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시된 저작물 권리관리정보를 이용하게 된다면, 저작물의 유형과 저작자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권리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감소하고 손쉽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창작활동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창작물은 개인의 소유물이란 측면외에도 공중의 공정한 이용이란 가치도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이번 구글과 미국작가협회와의 소송에서 미국연방법원이 구글이 주장한 ‘공정이용’이라는 항변을 받아들인 이유도 구글이 여러 가지 중요한 교육목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구글의 프로젝트가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는 문화와 과학의 진보를 가져와 사회전체에 이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판단[1]했다. 만약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제한되어 지식창조와 문화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국가적으로는 큰 손실이자 인류문화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라고 할 수 있다. 생성된 저작물이 인류 문화유산이고 현시대의 정보자원이라면 용이한 접근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서관도 다양한 저작물을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적 기능이 책무라면 도서관도 디지털화의 난제인 고아저작물 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다.

도서관 사서들 또한 이제는 지식자산 관리, 자원과 라이선스 액세스의 관리, 디지털 활용과 정보기술 등과 관련된 새로운 업무를 개척해야 한다[25].

구글과 관련된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공정이용에 관해 좀 더 유연한 법리해석을 한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국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은 영국의 저작권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폭넓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아저작물에 접근가능한 새로운 라이선스 방식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라이선스 방식으로 영국의 약 9천만 건의 고아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10월 29일부터 가능하게 되었다[26].

유럽의 ARROW와 같은 저작물관련 권리정보 DB는 어느 국가에도 필수적이다. 우리의 경우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유사한 DB를 구축하고 있지만 권리정보 DB구축보다는 권리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저작물관련 권리정보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서지정보를 바탕으로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정보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와 분석의 결과로 제시된 저작물 권리관리정보는 미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서관에서 저작물 관련 권리정보를 구축하고자 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의학도서관들이 국내 단행본 자료는 거의 유사한 저작물을 소장하고 있어서, 분석결과로 제시된 권리정보를 통해서 각 도서관의 소장자료가 공유저작물인지, 고아저작물인지 판단할 수 있고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할 경우 권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도서관이나 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저작물의 컨텐츠 관리를 체계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의학분야 이외에 다른 주제분야의 권리정보가 유관기관과의 공동작업이나 연구용역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 국내외 저작자 생몰지도 등의 권리정보도 만들어져서 권리침해의 논란없이 유용한 저작물들을 디지털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저작자의 소재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법의 둘레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작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추가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저작물권리정보 DB로

써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문 요약

도서관이 소장한 장서를 디지털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도서관’ 구현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자를 쉽게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 및 공정이용의 원칙에 의하여 디지털화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반면, 여전히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서 공공 영역의 자료에 속하지 않는 고아저작물(orphan works)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동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실제 고아저작물이 전체 저작물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구글북스같은 대규모 디지털화나 온라인접근에 장애물이 되어 왔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디지털도서관 구현의 장애물인 고아저작물의 공적 접근과 이용을 위해 아직 도서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고아저작물에 대하여 개념과 실체를 알아보고 고아저작물 문제를 도서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의학분야 저작물의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저작물의 서지정보와 참고정보원을 통해서 저작자의 존재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원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작권 권리관리정보의 기본 데이터를 만들고, 기본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집적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서지정보를 바탕으로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정보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연구와 분석의 결과로 제시된 저작물 권리관리정보는 미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서관에서 저작물 관련 권리정보를 구축하고자 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로 제시된 권리정보를 통해서 각 도서관의 소장자료가 공유저작물인지, 고아저작물인지 판단할 수 있고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할 경우 권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도서관이나 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저작물의 컨텐츠 관리를 체계화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의학분야 이외에 다른 주제분야의 관리정보가 유관기관과의 공동작업이나 연구 용역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 국내외 저작자 생몰지도 등의 권리정보도 만들어져서 권리침해의 논란없이 유용한 저작물들을 디지털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F.Supp.2d, 2013 WL 6017130 (S.D.N.Y.), 108 U.S.P.Q.2d 1674 No. 05 Civ. 8136(DC) [Internet]. New York, 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2013. [cited Oct 5 2014]. Available from: <http://international.westlaw.com>.
2. Korea Copyright Commission. Google books and copyright issue [Internet]. Seoul: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09. [cited Oct 6 2014]. Available from: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pageIndex=1&brdctsno=797&brdctsstatecode=&servicecode=02&nationcode=&searchText=>
3. Zimmerman M. Google wins summary judgment in books case. The Computer & Internet Lawyer 2014;31(2):1-3.
4. Roh HS. A study on copyright issue resolution for building digital libraries. Seoul: Korea University; 2011.
5. Sung MK. US Congress, consideration and passing legislation on copyrighted works whose owners are difficult or impossible to locate(Orphan Works) [Internet]. Seoul: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08. [cited 2014 Oct 6]. Available from: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53/1255295.do?menuNo=200911>. Korean.
6. Lee YR. The EU rights information management DB, understanding of the ARROW system. Copyright Issue Report 2010;23:1-7. Korean.
7. Hong YP. A study on the solution and use of orphan works: Beyond the problem with the google books, access to the library resources.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Informatics 2012;39(1-2):48-62. Korean.
8. Korea Contents Media. Korean medical directory [DVD]. Seoul: Korea Contents Media; 2012.
9. Korea University Yearbook of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Korea university yearbook. Seoul: Iljin; 1992.
10.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Membership directory of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Seoul: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2010.
11. Bokuen Newspaper. Korea health directory. Seoul: Bokuen Newspaper; 1995.
12. Bokuen Newspaper. Korea health yearbook. Seoul: Bokuen Newspaper; 1990.
13. Korea Copyright Commission. Find copyright service [Internet]. Seoul: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14. [cited 2014 Oct 24]. Available from: <http://www.findcopyright.or.kr/main/main.do>.
14. Eichenlaub N. Checking in with google books, HathiTrust, and the DPLA. Computers in Libraries 2013;33(9):4-9.
15. Lee YR. The use of orphan works with us US Copyright Law Goolge Books project. Copyright Issue Report 2009;8:1-7. Korean.
16. Park KH. New York court, Google Books Library Project is permissible fair use. Copyright Trends 2013;24:1-4. Korean.
17. Bunce A. British invasion: Importing the United Kingdom's orphan works solution to United States copyright law.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2014;108(1):243-282. Korean.
18. Regulatory Policy Committee. New data shows improvements in quality of government's impact assessments [Internet]. London, UK: UK Government; 2014. [cited 2014 Sep 27]. Available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data-shows-improvements-in-quality-of-governments-impact-assessments>.
19. Hazlett TW. Opening the library doors to the world: Second circuit finds universities' book scanning project constitutes "fair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Internet]. Wilmington, DE: Schnader Harrison Segal & Lewis LLP; 2014. [cited 2014 Nov 11]. Available from: <http://www.jdsupra.com/legalnews/opening-the-library-doors-to-the-world-64067/>.
20. Castro C, de Queiroz R. Google books project and copyright in a digital ag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013;16(9):1441-1455 doi:10.1080/1369118X.2012.681678.
21. Caroli C, Scipione G. ARROW: Accessible registries of rights information and orphan works towards Europeana. D-Lib Magazine 2012;18:1-2 doi:10.1045/january2012-caroli.
22. EU Observatory. Orphan works database [Internet]. Alicante, ES: The 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

- 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14. [cited 2014 Nov 12]. Available from: <https://oami.europa.eu/ohimportal/en/web/observatory/orphan-works-database>.
23. Korea Copyright Commission. Gongyu madang [Internet]. Seoul: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14. [cited 2014 Oct 28]. Available from: <http://gongu.copyright.or.kr/index.do>.
24.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 OPEN: KOGO Korea open government licence [Internet]. Seoul: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 2014. [cited 2014 Oct 28]. Available from: <http://www.kogl.or.kr/open/index.do>.
25. Hurst S. Current trends in UK university libraries. *New Library World* 2013;114(9-10):398-407 doi:10.1108/NLW-04-2013-0032.
26.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Intellectual Property. UK opens access to 91 million orphan works [Internet]. London, UK: UK Government; 2014. [cited 2014 Nov 10]. Available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opens-access-to-91-million-orphan-works>.